



제1632호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7 1 1 호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도 시 재 생 과 2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 공 고 제 1 7 1 3 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처분사전 자 동 차 관 리 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1 호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 의 회 사 무 국 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2 호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의 회 사 무 국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3 호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 의 회 사 무 국 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4 호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 회 사 무 국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5 호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법 의 회 사 무 국 예고 및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6 호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의 회 사 무 국 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회사무국공고 제 5 7 호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법예 의 회 사 무 국 고 및 의견수렴
- 보 건 소 공 고 제 8 6 호 남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 식 품 위 생 과 개모집 알람

고 시

- 고 시 제 1 4 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67호선)사업 사업시행 도 시 재 생 과 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 고 시 제 1 4 7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711호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1년 ~ 2028년

지구명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일원	2,200,586㎡ (1,668,359㎡)	인천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 ()는 남동구 면적임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2021년 08월 30일 ~ 2021년 09월 13일(14일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1. 08. 30. ~ 2021. 09. 13.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FAX. 032-453-2959)
-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흙깎기), 성토(盛土:흙쌓기), 정지(整地: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토지의 분할·합병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2), 인천도시공사 개발사업처 개발기획부(☎070-4178-2779 또는 대표전화 032-260-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일원		
사업자시행자	인천도시공사		
공람기간	2021.08.30. ~ 2021.09.13. (14일간)		
관련지번 (소유지번)	인천광역시	구	동
의견제출자	☐ 소유자 ☐ 관계인 (해당사항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171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8. 31. ~ 2021. 9. 14.(14일간)
2.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3.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성 명	차량번호	주소	처분의 원인된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장*철	인천81바**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장*철	인천81바**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장*환	인천84바**14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박*훈	인천99아**3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206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신*선	인천81바**3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권*문	인천84바**9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김*산	인천99아**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김*혁	인천99아**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주식회사 더**	인천83사**10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차고지외밤샘주차	과징금 20만원

4.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T. 032-453-2916)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의견이 관련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

남 동 구 청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51호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6. ~ 8.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05
----------	------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26 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과 지원
5.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예산 운용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사업비의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교육시설 또는 노인교육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형식의 규정으로 기
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자료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참고자료]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①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권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대상·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 노인건강유지 ·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52호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점검 대상 및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점검요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점검시기 및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6. ~ 8.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
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06
----------	------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26 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강경숙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점검 대상 및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점검요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점검시기 및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업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 제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
4. “점검요원”이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담당공무원 또는 편의시설의 점검(이하 “점검”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
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

3.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
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제4조(점검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8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업무에 참여 할 수 없다.

제7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법 제9조의2에 따른 적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법 제15조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점검 업무를 법 제9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주등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점검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7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11조(업무의 대행),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참고 】**

-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 대행기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편의증진중앙센터)
- 대행기간 : 2019.1.1.~2021.12.31.
- 사업주체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
- 기관명칭 : 남동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 남동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2021년도)

(단위 : 천원)

총계	인건비	처우개선비	센터장수당	운영비
56,776	39,626	150	6,000	11,000

○ 추가예산 없음

작성자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53호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지원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예방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6. ~ 8.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07
----------	------

발의년월일 : 2021년 8월 26일

발 의 자 : 최재현·김안나 의원

찬 성 자 : 오용환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지원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예방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실종”이란 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사고·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5. “실종이력이 있는 장애인”이란 경찰서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
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경험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예산 등의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요예산액
 - 배회감지기 지원비 170,000원 x 30명 = 5,100,000원

예상 지급액 5,100천원으로 조례에 따른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성자 :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2020. 12. 29.>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54호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안 제2조, 제3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안 제6조)
-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7조)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등의 방법 (안 제8조)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9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규정(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6. ~ 8.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
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
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용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08
----------	------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6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 규정(안 제2조, 제3조)
-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안 제6조)
-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7조)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등의 방법 (안 제8조)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9조)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안 제10조)
- 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규정(안 제11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어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내 라돈 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9조(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제10조(교육 및 홍보)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보호 및 환경 상 위 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참고자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3. 29., 2019. 4. 2.>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대합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12의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실내주차장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31., 2020. 5. 26.>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기숙사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 3. 22., 2014. 1. 7.>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3. 31.>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 모든 대규모점포
 1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② 삭제 <2016. 12. 20.>

- ③ 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 5. 25.>
-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 3. 18.>

□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mu\text{g}/\text{m}^3$)	미세먼지 (PM-2.5) ($\mu\text{g}/\text{m}^3$)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 하이드 ($\mu\text{g}/\text{m}^3$)	총부유 세균 (CFU/ m^3)	일 산 화 탄 소 (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mu\text{g}/\text{m}^3$ 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라. 화장실용 배기관
 - 마. 조리용 배기관

□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55호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 (안 제5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사업내용 (안 제6조)
-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안 제7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신청 절차 등 (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6. ~ 8.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이선옥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09
----------	------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6일

발 의 자 : 이선옥 의원

찬 성 자 : 오용환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대상지 (안 제5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사업내용 (안 제6조)
- 위험수목의 실태조사 (안 제7조)
- 위험수목의 처리지원 신청 절차 등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5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건축법」 제42조 제2항
- 「건축법시행령」 제3조5
- 「산림보호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2. 「건축법시행령」 제3조5에 따른 노유자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자치 의결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주택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간 동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할 수 있다.

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2조 6의5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전원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공사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작성자 :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장 박 호 진

[참고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 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5 관련)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	지 번: (지목 :)					
	소유자: (연락처:)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신청사유						
대상수목	연 번	나무종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원내용	비 고
	※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상기와 같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남동구청장 귀하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 치 도

전경사진

근경사진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수목위치: 인천 남동구
- 수종 및 수량:
- 정비사유:
- 정비내용:

상기 본인은 남동구 _____ 번지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 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소유자: (인)

(연락처:)

붙임 : 공동소유자 동의서

남동구청장 귀하

[붙임]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명	주소(동 호수 명기)	서명(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남동구청장 귀하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56호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상 운행 규정이 마련된 바,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이용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6. ~ 8. 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경숙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10
----------	------

발의년월일 : 2021년 08월 26일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찬 성 자 : 오용환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상 운행 규정이 마련된 바,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이용안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조, 제13조의2, 제44조, 제50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이하 “이용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구민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민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국회에 상정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를 추진하고자 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장 박종일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에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란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의 이동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이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군수·구청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공모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시민, 관련 기관 및 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군·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1-57호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
- ※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안” 반영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 안 제3조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안 제4조, 제5조
- 관리주체 : 안 제6조
-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사무의 위탁 : 안 제8조, 제9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 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1. 8. 26. ~ 8. 31.(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반미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04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6일

발 의 자 :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안” 반영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 안 제3조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안 제4조, 제5조
- 관리주체 : 안 제6조
-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및 사무의 위탁 : 안 제8조, 제9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 안 제11조

☐ 본 문 : “별 첨”

☐ 신·구조문대비표 : “없 음”

☐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남동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관리번호,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대장작성·관리)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장 강천식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13-339호)**

■ **개선방안**

1. 야외 운동기구 제조·설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2. 야외 운동기구 관리·감독 강화

○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각 지방자치단체)

- 별도 지침을 제정하거나 체육시설 관련 조례의 적용 대상에 야외 운동기구를 포함하고, 관리기준 구체화

3.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개선

4.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 야외 운동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 신설(각 지방자치단체)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 2021-86호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의거, 『남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1년 8월 30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4. 12. 31.(3년)
- 사 업 비 : 연간 945,000천원(2021년 기준)
 - ※ 매년 국·시비 지원금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위탁사무
 -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및 보급, 영양 관리
 -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예산 확보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 병행수행

2. 접수기간 및 장소(신청서 교부)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8. 30.~ 9. 13. (09:00~18:00)
- 접수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접수 및 방문 제출 병행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에서 공모현황 확인후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일체 방문제출
 - ※ 근무시간 외 및 택배, 우편 접수 불가

- 서식교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및 남동구 홈페이지(소식과 알림-남동구고시/공고) 참조
- 장 소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3. 자격요건

-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기관이나 법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 식품관련 박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이상 경력자
 - 식품관련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후 식품관련분야의 7년이상 경력자
 - 식품기술사 자격증 취득한 후 식품관련분야의 5년이상 경력자
 - 5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재직기간동안 식품관련분야의 3년이상 경력자
- 결격사유
- 최근 5년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
 - 최근 5년이내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진행 중 포함)된 경우
 - 운영주체의 공신력 및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경우

4. 제출서류

- ① 수탁신청서 1부(소정양식)
- ② 기관(법인) 대표자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사항 요약서 1부 (소정양식)
- ③ 신청기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센터장(내정자) 자격·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④ 기관(법인) 조직 및 운용 현황 1부(소정양식)
- ⑤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에 한함)
- ⑥ 공공급식, 영양관련 사업 참여 실적(최근 3년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⑦ 위탁 운영기간 동안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 1부(소정양식)
- ⑧ 서약서 1부(소정양식)
- ⑨ 성명, 생년월일 등이 제공되는 각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 (소정양식)

- ※ 상기서류는 1권으로 편철하여 10부 제출
- ※ 프리젠테이션 보고자료 1부(USB 저장 제출, 10분이내분량)

5. 위탁운영기관 선정방법 및 통지

○ 심사절차 및 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실시
- 신청인(센터장 내정자)은 심의위원회 현장심사일에 참석하여사업계획을 설명(10분이내)하여야 하며, 불참시 포기로 간주함. 다만, 심사 5일전까지 신청인(센터장 내정자)의 위임장 제출로 위임 가능

○ 심사기준 및 배점(안)

구분	계	서류심사	현장심사
		○ 공신력 및 재정능력 ○ 사업추진실적 ○ 인력관리 ○ 시설 및 장비 운영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효과성 ○ 발전가능성
배점	100	30	70

- 심사일시 및 장소 : 접수 후 개별통지
- 선정방법 :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 평가 후
심사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 선정
 - ※ 최고점수 동점의 경우,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에 한해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하며, 추가신청자 없을 경우 1개 기관(단체)만 심사(이 경우, 심사점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선정결과 : 결정기관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등 게시

6. 기타사항

- 고용(공고일 기준 현재 센터에 고용된 직원) 및 사업승계 원칙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일부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 : 식품위생과 유통식품팀 (☎032-453-2752)

붙임 1. 수탁신청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 관·단 체	명 칭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 제)				
인력(임직원)	명 (임원 명, 직원 명)			
보 유 시 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보 유 장 비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			
보 유 기 술				
기 타 사 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2. 기관(법인)대표자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사항 요약서

기관(법인)대표자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사항 요약서

아래는 기관(법인) 대표자의 경력사항 및 센터를 총괄 관리할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 확인을 위하여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관(법인) 대표자의 경력사항		
센터장 (성명)	생년월일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붙임 3. 법인의 조직 및 운영현황

기관(법인) 조직 및 운용 현황

1. 기관(법인)명칭 :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3. 설립목적 :

4.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년 월 일	연 혁	비 고

5. 주요사업 :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직 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7. 직원현황 : 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사업 관계 직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요자격·경력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 고
						정규직 비정규직

8. 기구 및 운영부서(조직도)

(2/2)

9. 기관(법인) 재무조서

가. 부동산(토지, 건물) 현황

종별	명칭	소재지	규모(㎡)	평가액(백만)	비고

나. 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및 출연금 현황

구 분	명 칭	평가액(백만)	비고

다. 사업소득 현황

세 입		세 출	
내역	금액(백만)	내역	금액(백만)
계		계	

라. 부채 현황

내용	금액(백만)	비고

10. 공공급식·영양관련 사업 참여 실적(최근 3년간)

11. 기타(수상경력, 사회봉사 활동 실적, 언론보도 사례 등)

붙임 4.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예산계획서 포함)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목표 (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사업의 필요성)
2. 운영방침
3. 조직 및 기구 구성계획
 - 가. 인력확보 계획(자격증 소지자 확보)
 - 나. 인력담당업무 배분계획
4. 세부사업 운영계획 (급식시설 등록·관리,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 관리 계획)
 - 가. 아래의 위탁사무 내용을 참조하여 사업량을 계량화 할 것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 영양 및 식사지도
 -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개발
 -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자체평가 계획 (사업의 효과 및 발전 방안 등)
6. 과목별 사업예산의 산출 내역서(양식 1)

붙임 5. 서약서

서 약 서

서 약 자	법인명		법인번호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상기 본인은 금번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제출 서류의 내용과 다를 경우 또는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 경제적, 행정적 제반 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보건소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남동구보건소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으로 선정 시 기존 센터 근무 직원의 고용 및 사업 승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자격·경력사항 등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위탁 운영기관 선정 절차 진행·심사	성명, 생년월일, 자격·경력사항 등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4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67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고잔동 소로1-6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5)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년 8월 26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6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고잔동 소로1-67호선 확·포장공사

3. 사업규모

- L=119.6m, B=2.8~3.5m, A=374.0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주식회사 예림임업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35번길 29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용지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이름	주소	
1	고잔동	761	잡	1,470.6	374.0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 지장물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장물 종류	규격	단위	수량	비고
1	고잔동	761	가스맨홀	-	ea	3	
2	고잔동	761	통신주	-	주	1	KT
3	고잔동	761	전주	-	주	3	한전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1-147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33 (논현동) 외 2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3번길 39-42 (만수동) 외 1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3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 (2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5)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33-17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33 (논현동)	2009.11.16.	소래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8.27.	건물 등의 주된 소래로154번길 3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3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644-8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232번길 8-5 (서창동)	2009.11.16.	장아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8.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장아산로232번길 8-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8-5를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6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25-5 (구월동)	2009.11.16.	문화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1.8.2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서로28번길 25-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5-5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53번길 39-42 (만수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47-10 (만수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16-2 (운연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16-1 (운연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16-3 (운연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서로 12-2 (운연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72번길 32 (논현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72 (고잔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제1632호

남동구 구보

2021. 8. 30. 월요일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68번길 11 (논현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68번길 9 (논현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68번길 7-1 (논현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68번길 7 (논현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68번길 3 (논현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74번길 26-1 (고잔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74번길 26 (고잔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056 (고잔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484번길 8-18 (고잔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8번길 11 (논현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8번길 7 (논현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8번길 5 (논현동)	2021.8.27.	건물 말소로 인한 폐지	